

한국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	--

- 이에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 235 조)
-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 도해

WTO/TRIPs 협정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		
▼		
관세법 제 235 조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침해물품 통관불허)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통관보류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침해물품
	수사·처벌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령 위반사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14 호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법령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세관공무원에 부여)		

▶ 상표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

● 상표권침해물품이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 조)

●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통관보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사실을 상표권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신고인의 요청(담보 제공)에 의해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1 조)

●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통관보류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될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2 조)

● 위조의심물품의 통관보류

세관장은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더라도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통보하여 당해물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후 통관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3 조)

● 위조가 명백한 물품의 직권 통관보류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 조 제 9 호)

-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이 위조상품이 명백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세관신고 유무 또는 상표권자의 통관보류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통관보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 위반형의로 송치의뢰 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4 조)

▶ 저작권 등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저작권 등 침해물품이란?

저작권 등 침해물품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 등이 되는 불법복제물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의 물품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 조)

●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는 위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와 같습니다.

▶ 품종보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품종보호권 침해물품이란?

품종보호권 침해물품이란 설정등록된 타인의 품종을 허락없이 실시하거나 타인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 조)

- 품종보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는 위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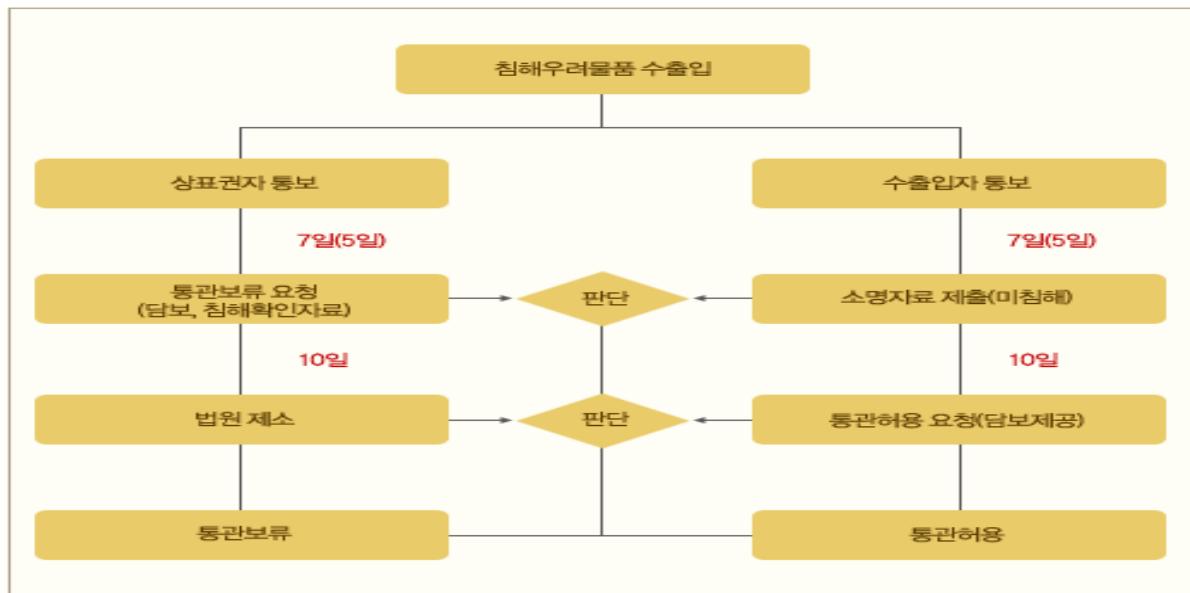
▶ 지리적표시권 등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지리적표시권 등 침해물품이란?

지리적표시권 등 침해물품이란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를 해당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수요자간에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등에 사용하거나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모조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 조)

- 지리적표시권 등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는 위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와 같습니다.

▶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도



- 7(5) 근무일이내 통관보류 신청(담보: 과세가격 120%)

- 통관보류 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법원제소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법 등 각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 93 조에 의하여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 136 조에 의하여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종자산업법 제 169 조에 의하여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리적표시품의 허위·유사표시 등을 한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35 조에 의하여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표법 및 저작권법 외에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자는 관련법위반으로 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4 호)